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5093 제출연월일: 2024. 10. 31.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 설치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납부의무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현행 제5조의2제1항 단서 삭제)

종전에는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부담금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함.

- 나.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등(안 제6조의2 신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요청하도록 함.
 - 2)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부담금 신설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다.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 근거 마련(안 제11조 신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의 근거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의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 조치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12조 신설)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마. 분쟁조정의 절차(안 제18조 신설)
 - 1)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함.

- 2)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과 해당 부과권자가 조정안을 수 락한 경우에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하도록 함.
- 3) 해당 부과권자는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합의서 또는 조정서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함.

법률 제 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를 "특정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 중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을 "부담금에 100분의 3을 곱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을 "부담금에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으로한다.

제6조의 제목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를 "(부담금의 신설 등에 관한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의 신설, 변경 또는 존속기한 연장(이하"신설등"이라 한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 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
- 2.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해당 부담금의 존속기한 이 만료되기 6개월 전

제6조제2항 중 "신설 또는 변경"을 "신설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설 또는 변경"을 "신설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을 "부담금의 신설 등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신설 또는 변경"을 "신설등"으로 한다.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신설타당성평가"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설타당성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이 제6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설타당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신설타당성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 그 밖에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정기준을 갖춘 기관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전담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평가전담기관이 같은 호에 따른 지정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신설타당성평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⑥ 신설타당성평가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평가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을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신설·변경"을 "신설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설·변경·폐지"를 "신설등, 폐지"로, "이를 반영하도록"을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제5조의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중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 조치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쟁조정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 제12조(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 는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또는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금융·산업·에너지·보건·의료·환경·국토·교통 또는 그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담금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5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 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6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해당부과권자에게 그 회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부과권자는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은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판 청구 또는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해당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분쟁조정의 절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출입조사는 사건의 조정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신청인 및 해당 부과 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해당 부과권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 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과 해당 부과권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

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신청인과 해당 부과권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 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는 그 합의 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⑧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에게 그 조정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공받은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는 그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① 해당 부과권자는 제7항에 따라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10항에 따라 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합의서 또는 조정서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비용의 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2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개발부담금의 존속기한) 개발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부담금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부담금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소음부담금의 존속기한) 소음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만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출국납부금의 존속기한)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납부금의 존속기한) 제30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부담금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6호 중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4항"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부담금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에 제1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금의 존속기한)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물이용부담금의 존속기한) 물이용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출연금의 존속기한) 제13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물이용부담금의 존속기한) 물이용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출연금의 존속기한) 제4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수입이익금의 존속기한) 제16조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존속기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존속기한 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배출부과금의 존속기한)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부담금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를 제79조의3으로 하고, 제5장에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의 존속 기한) 제58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혼잡통행료 및 부담금의 존속기한) 제35조에 따른 혼잡통 행료 및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 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배출부과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존속기한)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부담금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분담금의 존속기한)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분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부담금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장에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수입이익금의 존속기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4(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이행보증금의 존속기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및 제19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존속 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분담금의 존속기한) 분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성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부과금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과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부담금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존속기한)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출연금의 존속기한) 제6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9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4(부담금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수입이익금의 존속기한)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에 제8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4(기여금의 존속기한) 기여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물이용부담금의 존속기한) 물이용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6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부담금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 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 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부담금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부담금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에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부담금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납부금의 존속기한) 제20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납부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 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④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고,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부담금의 존속기한)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5(분담금의 존속기한)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존속기한)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 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8조의3(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존속기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공매납입금 등의 존속기한) 제22조에 따른 공매납입금 및 수입이익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3조의2(부담금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에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부담금의 존속기한) 제51조에 따른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존속기한) 전기·전 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존속 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편에 제4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7조의2(납부금의 존속기한) 제245조제3항 및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출연금의 존속기한)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존속기

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ᡚ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존속기한)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 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존속기한)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 지조성비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수입이익금의 존속기한) 제45조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원인자부담금의 존속기한)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물이용부담금의 존속기한) 물이용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국제교류기여금의 존속기한)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 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 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출연금의 존속기한)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 증기금 출연금과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출연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 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장에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0조의3(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존속기한) 제49조에 따른 해양생 태계보전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 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⑩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장에 제1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5조(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의 존속기한) 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개선부담금의 존속기한) 개선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7조의2(배출부과금의 존속기한)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	제2조(정의)
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	
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	
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	
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u>특정</u>	특정
<u>공익사업과 관련하여</u> 법률에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	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u>에게</u>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	
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	
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
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정) ①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u>다만, 그 부</u>	<u><단서 삭제></u>
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	
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5조의3(가산금 등)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그 가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 1.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 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 는 가산금 등: 체납된 부담금 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 앤
-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 금 등: 체납기간 1일당 체납 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 제6 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 시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3(가산금 등) ① (현행과
같음)
2
1
부담금에
100분의 3을 곱한
2
<u>부</u>
담금에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제6조(부담금의 신설 등에 관한
<u> </u>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

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 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 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 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u>신설 또는 변경</u>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 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의 신설, 변경 또는 존속기한 연장(이하 "신설등"이라한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한다.

-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하 려는 경우: 해당 법령안을 입 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
- 2.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하려는 경우: 해당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

2	 	
	 <u>신설등</u> -	
	 ·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 금의 <u>신설</u>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 여야 한다.

- 1. <u>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u>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 2. ~ 5. (생략)
-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u>신설</u>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설등
1. 부담금의 신설등을 하려는
2. ~ 5. (현행과 같음)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u> </u>
4
<u>신설</u>
<u> </u>
데6조의2(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신설타당성평가"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설타당성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이 제6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설타당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신설타당성평가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 2. 그 밖에 전문인력 및 조사

 연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

 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전담기관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평 가전담기관이 같은 호에 따 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
- 3. 신설타당성평가 업무를 적 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제6조의2 (생 략)

<신 설>

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 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 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 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 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지 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 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 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⑥ 신설타당성평가의 방법·절 차, 제3항에 따른 평가전담기 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 (현행 제6조의2와 같 음)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후단 삭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부담 금의 존치 필요성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u>제1항</u>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 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 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 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 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제

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
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
<u> 여야 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
<u>④</u> 제3항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⑥</u> 제5항
]]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

(생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부담금의 <u>신설·변경</u> 및 폐 지에 관한 사항
- 2. <u>제8조제4항</u>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 3. 4.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 기한 의견청취) ① 기획재정부장 관은 부담금의 <u>신설·변경·폐</u> 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비영리민 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u>이를</u>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u><신설></u>

②
·.
1 <u>신설등</u>
2. <u>제8조제5항</u>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
한 의견청취) ①
<u>신설등, 폐지</u>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부담금 부과·징수에 관
한 분쟁조정 신청)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제5조의4에 따른

(혀해과 간은)

<u><신 설></u>

권리구제절차 중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 조치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구성 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분 쟁조정사건을 회부하여야 한 다.

제12조(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 의 사람이 된다.
-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 는 3급 이상 공무원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또는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판사・검사또는 변호사로5년 이상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산업·에너지·보
건·의료·환경·국토·
교통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의 대표
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5
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담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 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 다.
 - 1.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신 설>

-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 지 아니한다.
 -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 2.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

우

- 제15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u>제척・기피・회피)</u> ① 분쟁조 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회부 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사건" 이라 한다)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 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 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 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 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 우자였던 사람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관 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관 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가 속한 법인 · 단체 등에 임 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 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 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 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과 해당 부과권자에

<u><신</u>설>

- <u>게 그 회부 사실을 통지하여야</u>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부과권자는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 - ② 신청인은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해당 사 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 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판 청구 또는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 실을 신청인과 해당 부과권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의 절차) ① 분 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사건 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 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 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부 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 회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 조사를 위하여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사업장 등에 출입 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출입조사는 사건의 조 정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야 하며, 신청인 및 해당 부과 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해당 부과권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수 있다.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과 해당 부과권자가 분쟁의 해결 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해 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 고 신청인과 해당 부과권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 정위원회의 위원장, 신청인 및

<u>해당 부과권자는 그 합의서에</u> <u>서명하여야 한다.</u>

8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에게 그 조정안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공받은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는 그 제공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장,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 는 그 조정서에 서명하여야 한 다.

①해당부과권자는제7항에따라신청인과합의하거나제1②항에따라조정이완료된경

<신 설>

우에는 그 합의서 또는 조정서 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부과처 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①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용의 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2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설 타당성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제6조의2	장관은 신설타당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		
1	(부담금 신설의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		
	타당성 평가)	o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신설타당성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12조	○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부담금		
2	(부담금분쟁	분쟁조정위원회를 둠(제12조 신설)에 따라 위원회 운영비용		
	조정위원회)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제6조의2	
1	(부담금 신설의	제1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타당성 평가)	
	제12조	
2	(부담금분쟁	제1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조정위원회)	

2. 상세 사유

- O (신설타당성평가) 최근 10년간 부담금 신설 건수('14~'23년 4건) 등 감안시,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전망됨, 다만 신설 제도로, 구체적 추계는 곤란한 측면
 - * ('1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 16) 폐기물처분부담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23)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일부 운영비용*이 발생하나, 부담금분쟁조정 위원회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내에 설치되며,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운영됨 감안시, 현행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기존 예산 범위 내 운용 가능
 - * 운영비용 추계(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수준인 연평균 6회 개최 가정시 : 11백만원 = 200천원(회의 및 자문료 편성단가) x 9명 x 6회(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21~ '23년 연평균 개최실적)
 - ** '재정시업평가' 세부시업 '24년 3,257백만원 '재정시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비' ('24년 228백만원) 내역시업에서 집 행중

Ⅲ. 부대의견

O	히	당시	항	없	읖
\smile	~			HA	\neg

Ⅳ.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_	이상협 사무관	이지원	김명중
_	이경엽 사무선	재정성과평가과장	재정성과심의관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상협	044-215-5373	shlee1234@korea.kr